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56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의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정준호 · 양부남 · 박홍배

송재봉 · 김문수 · 이성윤

최혁진 · 박선원 · 김태선

복기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

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5년</u>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u>2027년</u>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